

제19장 제도 규정

제19.1조 공동위원회

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장관급 한국-중국 자유무역지대 공동위원회(이하 “공동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19.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

1. 공동위원회는
 - 가. 이 협정의 이행 및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.
 - 나.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이 협정상 약속의 수정에 관한 제안을 검토한다.
 - 다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.
 - 라.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.
 - 마.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그리고
 - 바.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.
2. 공동위원회는
 - 가. 임시 및 상설 위원회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.
 - 나.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. 그리고
 - 다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9.3조 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

1. 공동위원회는 제19.2조에 규정된 그 기능 내에서 모든 사안에 관하여 상호 합의로 결정을 내린다.

2. 공동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 회기로,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때에 회합한다. 공동위원회의 정기 회기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, 각 당사국이 순차적으로 의장이 된다. 공동위원회의 그 밖의 회기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고, 그 회의를 주최하는 당사국이 의장이 된다.
3.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그 승계자 그리고 중국 상무부장 또는 그 승계자나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.
4.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 대한 자국 대표단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.
5. 공동위원회 회기의 의장인 당사국은 그 회기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,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논의를 기록하며, 그 사본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될 것이다.
6.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19.2조제2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.
7.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.

제19.4조 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

1. 공동위원회의 산하에 다음의 위원회와 기구가 설치된다.

- 가. 상품무역위원회
- 나. 서비스무역위원회
- 다. 금융서비스위원회
- 라. 자연인의이동위원회
- 마. 투자위원회
- 바. 관세위원회
 - 1) 원산지규정소위원회
 - 2)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소위원회
- 사. 역외가공지역위원회
- 아. 무역구제위원회
- 자.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

차.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

카. 지식재산권위원회

타. 환경과무역위원회, 그리고

파. 경제협력위원회

2. 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.

3. 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9.5조 접촉선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한다. 다음의 접촉선이 지정된다.

가. 중국의 경우, 상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
나. 한국의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

2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하나 이상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, 요청한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.